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636

발의연월일: 2024. 10. 10.

발 의 자:황운하·김준형·조 국

김선민 · 신장식 · 박상혁

이해민 · 강경숙 · 정춘생

천하람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위원회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등의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에 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것으로 보고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는 자동부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.

하지만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기한을 정함으로써 예산안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와는 달리, 매년 예산안 심사 기한에 쫓기면서 소관 위원회의 충실한 심사를 거치지 못하고 예산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.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의권한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이지만 기한 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조건에 따라 국회 의견이 배제된 정부안이 자동부의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권력기관 간의 견제 기능 또한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.

이에 예산안 등의 자동부의를 폐지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의와 협의

의 절차를 충실히 거치도록 하여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85조의3). 법률 제 호

#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5조의3의 제목 중 "자동"을 "신속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"를 "그 다음 날부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"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제2항 본문"을 각각 "제2항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5조의3(예산안 등의 본회의	제85조의3(예산안 등의 본회의
<u>자동</u> 부의 등) ① (생 략)	<u>신속</u> 부의 등) ① (현행과 같
	<u></u> 수
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	②
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	
수 법률안(체계·자구 심사를	
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	
된 법률안을 포함한다)에 대하	
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	
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	
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	그 다음 날부터 의장은 각 교
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	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
부의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의	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
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	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
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	<u>있다</u> . <u>&lt;단서 삭제&gt;</u>
<u>니하다.</u>	
③ 의장은 <u>제2항 본문</u> 에 따른	③ <u>제2항</u>
법률안 중에 같은 제명의 법률	
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<u>제2</u>	<u>제2항</u>
<u>항 본문</u> 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	
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	
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	
할 수 있다.	

④・⑤ (생 략)

④·⑤ (현행과 같음)